

문서번호	인재개발원-1332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6.04.07.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19호

★과장	팀장	인재개발원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협 조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권 마인드 함양 등
2016 인권침해 없는 조직문화 조성 계획

2016. 4.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권 마인드 함양 등

2016 인권침해 없는 조직문화 조성 계획

I. 추진개요

- 분야
 -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언어폭력 예방
 - └ 장애인 인권, 인권 증진 * 분야별 근거법령 참조

인권 관련 대내외 환경

대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실현 및 실질적 인권교육 필요 (서비스직 운전업무 종사자 장애체험 등)
대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직원 비율 확대 추세 ▶ 인권 침해 없는 조직 분위기에 대한 대내적 요구 강화
기관 의무 (평가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관계 법령 및 서울시 조례 등에 의거 연간 실시 회수 지정 ▶ 각종 평가 관련 전략적 대응 및 확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평가 지표 : 책임경영구현 > 경영혁신 현안 추진노력 (가중치 2)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한 노력 : 임직원 대상 성주류화 및 성인지 교육 연 2회 - 서울시 2015 경영혁신 공통과제 평가실사 시 권고사항 :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외부전문가 교육으로 연 2회 이상 실시

2016년 추진방향

-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의식 함양 (Bottom-Up)
 - 기관 의무 교육 확행 및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신고 채널 확대
- 인권 보호 의식 확대 (Cascading) : 관리자 대상 교육, 부서장 다짐·선서
- 건강한 조직문화 유지를 위한 일상적 예방 홍보 추진 : 홍보 인프라 활용

분야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성희롱 예방	부서장 전달 교육 관리자 대상 교육	정례조례 전직원 전문교육	부서장 전달 교육
성매매, 성·가정·언어폭력 장애인 인권	부서장 전달 교육 부서장 전달 교육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 교육	부서장 전달 교육 부서장 전달 교육
인권		찾아가는 인권 교육	

II. 추진계획

□ 인권 마인드 교육

① 의무 교육 실시

※ 성주류화 및 성인지 교육내용 포함

- 관련근거 : 개별 관계 법령, 서울시 조례 및 방침에 의함
- 교육대상 : 전직원 — 기간제, 파트타이머, 공익근무요원 포함
- 실시회수 : (연 2회)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권 (연 1회) 그 외 분야
- 교육방법 : 전문강사 교육 및 부서장 전달교육 (교육자료 제공)

☞ 관리자의 인권 실천 의지 고양

- ▶ 부서장, 팀장 대상 집체 교육 실시 : 핵심가치토론회 등(전문강사 활용)
- ▶ 부서장 인권 보호 다짐 및 선서 : 4월, 10월 — 성희롱 예방 전달 교육시

☞ 서비스직 운전원 인권 교육 실시 (임용교육 시 등)

- ▶ 「장애체험」 및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고객을 이해하고
직원간 존중하는 문화 조성

② 권리 의식 함양 교육

- 대 상 : 성희롱 및 인권에 대한 상대적 취약 계층 - 신입, 공무원
- 방 법

- (신 입) 임용시 예방 교육 실시 및 집체교육 곤란시 사이버 교육 대체
- (공무직 등) 전문 교수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

교육대상에 맞게 성희롱의 개념 및 신고방법 등 알기 쉽게 전달

□ 각종 홍보 인프라 활용을 통한 일상적 예방

- 전자결재 팝업 창 생성 : 성희롱 예방 문화 관련 팝업 게시
 - 체련 대회 기간 및 매월 마지막 주 — 성희롱 예방 관련 문구, 이미지 등
- 청사 내 홍보 모니터에 영상 게시
 - 인재개발원 모니터, E/V 모니터 등

III. 행정사항

□ 공단 성희롱 예방지침 및 매뉴얼 현실화 (일부 개정)

- 개정사유 : 예방지침 및 매뉴얼의 상충 조항 개정, 현실화
- 주요내용
 -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수정 (매뉴얼 4쪽, 지침 11조)
 - : 교육 소관부서 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홍보마케팅실 (←미래전략실)
 - 공단 규정 및 예방지침, 매뉴얼과 상충 부분 수정 (지침 5조)
 - : 고충전담창구의 업무 일부 수정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의뢰 및 처리

□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의 실무 적응력 배양

-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인재개발원) : 사건 상담 및 고충 접수, 처리
- 성희롱 고충상담 실무 능력 배양 : (女) 김주연, (男) 박병호
 - 보수교육 수강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전문교육) : 5월중
- 외부 전문 심의위원 지속 유지 : 이미경, 정윤경 (2017. 5.13 까지)

□ 분야별 근거 법령 등

구 분	성 희 롱	성 매 매	성 폭 력	가정폭력	언어폭력	장애인 인권	인권증진
관련법 (제도)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상대방치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	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2104.9.29) 성희롱안팎 재발방지 대책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 제10조

따로붙임 : 2015년 추진실적, 성희롱 예방지침, 사건처리 매뉴얼 각 1부.